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및 일부 용어를 세부적으로 개정·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내용 반영
- 나.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추가 신설 (안 제4조)
- 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 삭제 (안 제6조)
-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11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12조)
- 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에 관한 사항 용어정리 및 삭제 (안 제5조 ~ 안 제9조)
- 아.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인상(안 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92조의2, 제92조의7,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제10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3) 입법예고 : 2016.5.4. ~ 2016.5.24. (20일 이상)
-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심사: 규제신설 없음
  - 위원회 협의: 위원회 신설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1조의2”로 “심의·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 중 “①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를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는 삭제한다.

별표 중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을 “30,000”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으로 한다.</u></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u>구 계약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구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한다.</u></p> <p>⑥ (생략)</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p> <p>----- <u>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④ <u>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⑤ -----</p> <p>---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u> -----</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① (생략)</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p> <p><u>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u></p>	<p>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u></p> <p><u>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u>&lt; 신 설 &gt;</u></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u>심의 또는 자문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에</u>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5조(회의 등) ① -----</p> <p>-----</p> <p><u>심의가</u> -----</p> <p>-----</p> <p>② (현행화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u>제11조의2</u>-----</p> <p><u>심의</u>-----</p> <p>-----</p> <p>-----</p>
<p>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u>심의 또는 자문을</u>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u></p>	<p>제6조(소위원회) ① -----</p> <p>----- <u>심의</u>를</p> <p>-----</p> <p>-----</p> <p><u>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u></p>

<p><u>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p> <p>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u>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u></p> <p>⑤ <u>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u></p> <p>⑥ ~ ⑦ (생략)</p> <p>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u>담당주사</u>,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p>	<p><u>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 ----- <u>소위원회의</u> <u>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u> <u>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u> <u>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u></p> <p><u>&lt;삭 제&gt;</u></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u>담당팀장,</u> ----- -----</p>
<p>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심의 또는 자문요청서</u>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u>심의 또는 자문을</u> 요청하여야 한다.</p>	<p>제7조(심의요청 등) ----- ----- <u>심의를</u> ----- ----- <u>심의</u> ----- ----- ----- <u>심의를</u> ----- -----</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p> <p>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u>심의 또는 자문요청서</u>를 받은 때에는 지체</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p> <p>① ----- <u>심의</u> -----</p>



<p>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안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u>심의 또는 자문</u>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심의 또는 자문</u>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u>심의 또는 자문</u> 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p> <p>-----</p> <p>② -----</p> <p>-----</p> <p>----- <u>심의</u></p> <p>-----</p> <p>----- <u>심의</u></p> <p>-----</p> <p>-----</p> <p>③ ----- <u>심의</u></p> <p>-----</p> <p>-----</p>
<p>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의견청취 등) -----</p> <p>-----</p> <p><u>심의를</u> -----</p> <p>-----</p> <p>-----</p> <p>-----</p> <p>-----</p> <p>-----</p> <p>-----</p>
<p>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u>제8조제3항</u>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u>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u></p>	<p>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u>제8조제3항</u>-----</p> <p>-----</p> <p>-----</p> <p>-----</p> <p>-----</p> <p>-----</p> <p><u>&lt;삭 제&gt;</u></p>

<p><u>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u></p>	
<p><u>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li> <li><u>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u></li> <li><u>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li> <li><u>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li> </ol>	<p><u>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u></p> <p><u>1. ~ 4. &lt;삭 제&gt;</u></p>
<p><u>&lt;신 설&gt;</u></p>	<p><u>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u></p>
<p><u>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u></p>	<p><u>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u>  <u>--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한다.</u></p>

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공원녹지 관련 공사
10.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 ~ 11. <삭 제>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100,000	
주민참여감독자	<u>20,000</u>	※ 주요공정 감독시만 지급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100,000	
주민참여감독자	<u>30,000</u>	※ 주요공정 감독시만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보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재무과 행정7급 양지숙(330-1169)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부과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위임 또는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8.6.]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타법개정]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

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8.19.>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5.>

[본조신설 2014.2.5.]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